

(기존공동주택용, 정의변경용)

(앞면)

열 수 급 계 약 서					
제 호					
사용자	공동주택명				
	공동주택소재지				
	입주자 대표회의	주소			
		성명		전화번호	
	주택관리업자	주소			
성명			전화번호		
사업자	주 소				
	성 명			전화번호	
사용자번호			계약종별		
공급열매체	<input type="checkbox"/> 온수		열사용용도	<input type="checkbox"/> 난방.급탕용, <input type="checkbox"/> 냉방용	
기계실수			열공급개시예정일		
계약면적			계약기간		
검침일			요금납부일		
재산한계점					
주 요 계 약 내 용	<p>1.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열공급규정을 계약내용으로 합니다.</p> <p>2. 이 계약 체결이후 열공급규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계약내용으로 합니다.</p> <p>3. 사용자는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변동내용을 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.</p> <p>4. 사용자는 사업자에게 열사용과 관련된 종전 사용자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데 동의합니다.</p> <p>5. 열공급규정에 다른 내용이 있거나 별도의 약정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공급규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한계점을 기준으로 시공, 유지 및 관리의 책임을 부담합니다.</p> <p>6. 사용자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8조 제1항 및 열공급규정 5장의 규정에 따라 공사비 부담금과 제6장의 규정에 따라 요금, 이자, 연체료, 위약금을 각각 납부해야 합니다.</p> <p>7. 사용자는 열공급개시 이전에 열수급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열공급규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사용자에게 열을 공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.</p> <p>8. 사업자는 열수급계약의 해지 등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용자에 대한 열공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, 공급구역내의 안정적인 열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에는 열공급시설을 존치시킬 수 있습니다.</p>				

주 요 계 약 내 용	<p>9.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열공급개시예정일 전일까지 열공급개시예정일 연기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 열공급개시예정일로부터 열공급개시예정일 연기신청일까지의 기간과 열공급규정 제44조 제3항 제1호, 제3호 및 제4호 이외의 사유로 최초의 열공급개시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열공급개시예정일을 연기한 경우에 3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기본요금의 30%를 납부해야 합니다.</p> <p>10. 사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열공급규정에서 정하는 요금, 공사비 부담금, 기타 이 열공급규정에 따라 부담해야 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은 금액의 2배를 한도로 하여 위약금을 부담해야 합니다.</p> <p>11. 사용자는 열사용시설내에 설치하는 사업자 소유의 계량기(원격검침설비를 포함)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전력은 무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.</p> <p>12. 사용자는 사업자가 열을 공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열공급시설 건설공사, 열수송관 건설공사(사용자간 연결공사를 포함합니다), 계량기 및 원격검침설비 설치공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. 토지와 공간의 점유가 필요한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.</p> <p>13. 기본요금 정산금에 대한 반환청구권과 추가납부의무는 다른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는 한 해당 건축물의 처분과 함께 이전됩니다.</p> <p>14. 사용자는 ①사용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열수급계약이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, ②사용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열공급이 정지된 경우, ③열공급규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공급중지.사용제한이 있는 경우, ④사업자에게 귀책 사유없는 사고로 인하여 열공급이 중단되거나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, ⑤행정기관의 지시.인허가 문제.민원 등으로 인하여 열공급시설에 대한 공사가 지연되어 열공급개시예정일에 열공급이 개시되지 않거나 열공급이 중지된 경우, ⑥사업자와 사용자가 아닌 제3자가 열공급시설에 대한 공사를 방해하여 열공급개시예정일에 열공급이 개시되지 않거나 열공급이 중지된 경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합니다.</p> <p>15. 열수급계약 체결 이후에 사용자가 정부의 허가(공고지역,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8조) 또는 사업자와의 협의(공고지역 외 지역, 열공급규정 제14조제5항제5호)없이 타 열생산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열수급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.</p> <p>16. 사업자는 열공급규정 제64조에 의거 보증금 예치사유가 있는 사용자에게 보증금 예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,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피 또는 거부 할 경우 규정 제23조에 의거 열공급을 정지 할 수 있습니다.</p> <p>17.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이전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열공급규정 제10조 제5항에 의거하여 1년 기한으로 계약이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됩니다.</p>
<p>사용자 본인은 주요 계약 내용을 충분히 읽고 이에 동의하며, 주요 계약 내용 중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은 사업자에게 문의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.</p>	
<p>년 월 일</p>	
<p>사용자 : 입주자대표회의 ○ ○ ○</p>	<p>(인)</p>
<p>사용자 : 주택관리업자 ○ ○ ○</p>	<p>(인)</p>
<p>사업자 :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</p>	<p>(인)</p>